

## 충청북도세조례증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00년 9월 6일

나. 회부일자 : 2000년 9월 7일

3. 제안이유

가.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법률 제16928호, 2000. 7. 29)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신설하고

나. 기타 도세조례의 일부내용을 법과 일치되도록 정비하기 위함.

4. 주요골자

가. 지방세심의위원회 소관사항 정비(안 제9조)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심의 의결 및 과세표준의 운영 기타 지방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으나

⇒ 과세표준관련사항을 삭제하고, 심의·의결로 정비

나.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안 제9조의 2)

○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지방세 과세표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써

-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 15인 이하로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 도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
-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 등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다. 군납업 등록에 따른 등록세 과세대상 삭제(제45조)

- 군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군납업자의 신규등록을 받을 때 매 1건당 115천원의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동 법률이 폐지(법률5598호, 1998. 12. 28 공포, 1999. 3. 1 시행)됨에 따라
- 지방세법에서도 등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도세조례를 법과 일치되도록 관련조문을 삭제.

### 5. 검토의견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 현행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는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에 대해서만 심의·의결토록 하고

-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별도로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신설 운영하려는 것이며
- “군납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신규 군납업자로부터 징수하던 등록세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서
- 동 조례안은 관련 법규와 일치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붙임: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